

I. 설 계 설 명 서

I.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본 과업은 관내 국도17호선 청주 서원 현도 우육리 가감속차로 등 4개소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 하고자 함.

2. 공 사 위 치

- 1) 공 사 명 : 국도17호선 청주 서원 현도 우육리 가감속차로 등 4개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2) 위 치 : ① 국도17호선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육리
② 국도37호선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③ 국도37호선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3. 공 사 개 요

○ 폐기물 운반 : 760ton, 폐콘크리트 : 110ton, 폐아스콘 : 650ton

1) 국도17호선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육리

- 폐기물 운반 : 178ton, 폐콘크리트 : 110ton, 폐아스콘 : 68ton

2) 국도37호선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 폐기물 운반 : 405ton, 폐아스콘 : 405ton

3) 국도37호선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 폐기물 운반 : 176ton, 폐아스콘 : 176ton

II. 공 자 지 방 석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라. 폐기물 관리지침
-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 처리지침
-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 가. 노임단가 : 1월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 나. 환 율 : 1월 기준으로 산정
- 다. 처리단가 : 처리업체의 견적가격에 의거 산정

라.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7.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5개월 (15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때
-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운반거리는 설계시 계상된 거리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2)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3) 기타 여건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될 경우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별도의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처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이라도 보관장소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4.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3)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배출지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을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관리원)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받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종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차. 폐기물 종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과적 방지대책 수립

가. 수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행위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4-1)」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정경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리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과적 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5-1.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 >

○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에 표기된 최대 적재량내에서 임차인과 운전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량(이하 “협의적 적재량”)으로 하되, 임차인이 도로법상 운행제한 중량(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내에서 최대로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에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장비)를 설치하여 과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에 설치하는 계량기는 축종계 등과 같이 적재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을 측정하여 글삭기 등의 상처회수 또는 적재함 상처높이를 결정하는 방식과 글삭기 버켓 등의 1회 채취 토석종량을 저울로 계량하여 상처회수 또는 적재함 상처높이를 결정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현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량기를 선정하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토석 등의 계량은 토취장별로 작업당일 차종별 “대표계측차량”을 대상으로 1일 1회 실시하여 상처 회수 또는 상처높이를 정하고, 나머지 차량 등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량에 따른 운반시간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수에 의한 과적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하는 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적재함 바닥판 보강 등의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보강강판의 중량만큼 적재중량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 o 대표계측차량 운송방식 및 협의적재차량 운송방식의 경우에는 계량일시, 계량값, 기상여건, 적용 적재량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관리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전체차량에 대하여 도로운행 전에 적재중량을 계측(이하 “전수계측차량”)하는 운송방식의 경우에 운송일시, 표준 계량값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 확인을 위한 사진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차량(대표계측, 협의적재, 전수계측) 운송방식별 과적관리 대정은 기존 도로로 반입·반출되는 토석 등 화물을 대상으로 토취장별 및 차종별로 1일 1매를 작성·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도중 강우 및 토질변화 등으로 토석의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계측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대장 1매를 추가로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o 적재차량의 중량 계측은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축종에서 계량 하고자 하는 특정 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하여야 한다.(수평보다 높으면 높은 값, 낮으면 낮은 값으로 계량)

III.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국도17호선 청주 서원 원도 우푼리 가감속차로 등 4개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공사기간 : 150일

구분	공종	보할 (%)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130일	140일	150일			
	폐기물처리	100.0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소	계	100.0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누	계		6.67	13.33	20.00	26.67	33.33	40.00	46.67	53.33	60.00	66.67	73.33	80.00	86.67	93.33	###			